

#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Ⅱ)

이준우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5-14

#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Ⅱ)

이 준 우



#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Ⅱ)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ne-Person Household Society(Ⅱ)

연구자 : 이준우(선임연구위원)  
Lee, Jun-Woo

2015.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일부 해체되어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되거나 개인으로 남는 사회임.
-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단계로 각각 단독 또는 구성원의 하나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전통적 구성체계에서 벗어난 것이 1인가구사회임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가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의 원리 또는 공동체원리에 따라 규율하던 법률관계가 그 적용범위에 혼란이 발생함.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부담하던 부분을 개인 또는 사회공동체가 더 분담하여야만 원활한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임.
- 이 연구는 1인가구사회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본격적인 1인가구사회의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 II. 주요 내용

- 주요 쟁점으로 사적자치의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1인가구의 행위능력 보완 내지 지원, 1인가구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

관계의 보완, 일상가사 및 생활법률관계에서 작용하는 보호자제도의 보완, 친족을 대체할 연고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관계의 보완 등을 고찰하였음.

- 1인가구의 사망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망의 확인, 사망신고, 시체의 처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 1인가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의 청산 등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모색하였음
  - 이 부분의 법률관계에서는 1인가구의 연고자 개념 및 역할이 중요한 요소.
  - 개별법률에서 정의규정을 각기 달리 둔 경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분석하여 기준되는 개념 범위, 동일한 연고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체계화 등을 꾀하였음.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은 부동산의 국가 귀속 이외에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등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동산 등의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여 무주물 선점 법리로 귀속을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
  -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의 전세금, 임대보증금은 물론 전세권 및 주택임대차의 청산에 관하여 예외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
  - 일반적인 물건의 이용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와 달리, 일방 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바탕으로 법률관계의 소멸원인으로 명시하고, 예외적인 단독등기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 1인가구는 사적자치의 보충 부문에서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사적자치를 확대하고, 실질화하여 가능한 한 1인가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률관계가 규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친족 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등을 1인가구에 적용하는 경우에 후견신청인이 실효성이 적음
  - 생전처분이나 유언으로 미리 결정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서 표준계약서, 법교육 등을 통하여 본인을 대리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 공동생활주택 등과 같이 1인가구의 확대로 새롭게 나타나는 목적물 및 이용관계는 1인가구 특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유경제의 문제로 보아 연구범위에서는 제외.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문제 역시 추후 연구로 제외함.
  
- 1인가구사회에는 가족공동체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법리가 적용되거나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사망과 후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
  - 생활법률관계에서는 후견에서 더 나아가 보호자의 역할 등을 확대하여 신체 및 재산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

### Ⅲ. 기대효과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 중심으로 된 법제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의 흠결 및 불합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 1인가구사회의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정책 수립과 법제의 확립에 기여

▶▶ 주제어 : 1인가구, 무연고자, 특별연고자, 성년후견제도, 독거노인, 양자제도, 가족법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One-person households society occurs when family community dismantles into an individual or a part of social community.
- One-person households society is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composition in which each member forms legal relationship as individual, family, society and state.
- Legal relationship which individual or family community governs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r community principle experiences confusion in its range of application.
- One-person households society is unique in that individual or social community bears responsibility which family community has traditionally beared.
- This study aims to seek measures to supplement defective legislation and to contribute for the preparation of reasonable legisl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 II . Main Contents

- Key issues concerns personal autonomy including supplement or support for legal capacity of one-person households, supplement



of legal relation concerning death of one-person household, supplement of guardian system operational in daily housework or legal relation, supplement of concept and relevant legislation of related persons to replace a relative.

- This study has sought to measure to solve issues concerning death of one-person household such as identifying the dead, death report, disposal of the body, reversion of properties without heirs, liquidation of legal relation having one-person household as party.
- A key issue in this context being the concept and roles of related persons
- After analyzing individual laws with definitional article or with no definitional article, sought to systemize legal relation to which the range of standard concept and identical concept of related persons apply
- Since the reversion of rental deposit and lease(chonse) deposit is important real estate right and it is incorrect to decide reversion based on the legal premise of preoccupancy of ownerless things related to personal properties, this study has remedied such defect.
- Sought a way having exceptional provisions concerning liquidation of vested right in lease(chonse) and housing rental as well as lease(Chonse) and rental deposit with no heirs attached

- Proposed a measure to permit an exceptional sole register application when unlike lapse of usage relation of a general thing, one party halt to cease to exist and such cessation is clearly stated as the reason of lapse of legal relation
- Needed to amend laws in the field of personal autonomy of one-person household and to expand personal autonomy so that legal relation is regulated by decision of one-person household
- Since no spouse and relatives exist, in case that adult guardianship applies to one-person household, effectiveness of a guardian applicant is meager.
- It is needed to prepare through standard contract and legal education, for legal issues for which principal agency cannot able to represent in that legal relation should be expanded by deposition inter vivos or will and receivers or guardian does not practically operate.
- This study has excluded from research coverage objective or usage relation such as co-housing which has newly emerged with the expansion of one-person household since they are viewed not as unique issue to one-person household but as sharing economy.
- With the coming of one-person household society, new social community legislation should be applied to supplement family community or new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supplement personal autonomy.

- Needed to expand the role of new social community regarding the death and guardianship
- Needed to supplement reasonably manage body and properties by expanding the role of guardians and protectors

### **III. Expected Effect**

- Suggested defect in laws caused by legislative limit centered individual or family community and proposed a pla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legislative policy and legislation in accordance to the expansion of one-person household society

➤ **Key Words** : One-person household, someone without family or relative, adult guardianship, the elderly who lives alone, Adoption system, Family Law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1. 연구의 배경 .....	15
2. 연구의 목적 .....	16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1. 연구의 범위 .....	17
2. 연구의 방법 .....	19
제 2 장 1인가구의 민사법관계의 제도적 미비점 .....	21
제 1 절 가족관계의 변화와 1인가구의 쟁점 .....	21
제 2 절 개별 법적 과제 .....	25
1. 무연고자 관련 법적 과제 .....	25
2. 적용 법률관계의 유형 및 문제점 .....	31
제 3 장 1인가구의 사망 관련 법제 .....	49
제 1 절 사망의 확인 .....	49
제 2 절 장사(매장, 화장, 납골 등) .....	51
1. 시체의 인수 .....	51
2. 시체의 처리(해부·장사) .....	52

제 3 절 1인가구 잔여재산의 귀속 .....	55
1.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문제점 .....	55
2. 특별연고자와 재산분여 .....	59
3. 잔여재산 중 부동산의 처리 .....	61
4.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 .....	63
5. 잔여재산의 처리와 사무관리 .....	63
제 4 절 1인가구의 사망과 부동산 이용 법률관계 .....	65
1. 주택임대차와 1인가구 .....	65
2. 전세권과 1인가구의 사망 .....	68
제 5 절 사정변경에 따른 1인가구의 재산 보호 .....	70
제 4 장 해체된 가정과 1인가구의 법적 과제 .....	73
제 1 절 1인가구의 성년후견 .....	73
1. 성년 후견 개시절차의 문제점 .....	73
2.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	74
3. 후견인의 권한 및 임무 확대 .....	78
제 2 절 생활법률관계의 보호자 부존재 .....	78
1. 현행법상 보호자제도 .....	78
2. 1인가구의 보호자 보완 .....	80
제 3 절 불완전 가정과 예비적 1인가구 .....	82
1. 독거노인과 1인가구 .....	82
2. 조손가정과 1인가구 .....	84
3. 소년소녀 가장 관련 법적 과제 .....	85
4. 비친족 동거가구 관련 법적 과제 .....	85

제 4 절 양자제도의 확대 · 보완 .....	88
1. 대리양육제도의 확대 .....	88
2. 입양요건의 조정 .....	89
제 5 장 법제 정비 방안 .....	93
제 1 절 개선 방향 .....	93
1. 가족법제의 보완 방향 .....	94
2. 민사특별법 개선방향 .....	95
제 2 절 부문별 법제 개선 방안 .....	97
1. 가족법 중 개정방안 .....	97
2.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	102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	102
4.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	103
참 고 문 헌 .....	10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공동체 중 가족공동체의 변화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유발한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기존 가족공동체 중심의 법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사회보장 대상자의 증가, 주거문화의 변화 등은 물론 복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가족공동체를 전제로 한 법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혼문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는 가족공동체가 분담 하던 육아, 부양, 간호 등을 사회공동체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화를 초래한다. 헌법상 ‘건강한 가정’ 이념이 ‘건강한 1인 가구’의 문제로 확대하여야 하는 현안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조사 참여자의 선택적 비혼으로 지속적으로 비혼을 유지할 가능성에 해당하는 비율은 24.4%에 해당한다.”<sup>1)</sup>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의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 가구의 급증은 주거문제, 주민관리, 주민정보,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다양한 고려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합리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률관계에서 사법분야에는 성년후견제도, 입양제도, 재산

---

1) 이성은 외,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88면.

관리인, 상속제도, 매장·묘지제도 등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고, 공법 분야에서는 사회공동체, 주거공간의 건축·이용·관리,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공익적 신탁 등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미혼, 이혼, 고령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중심의 법제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1인 가구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와 관련되는 법제의 정비와 보완을 도모함으로써 건정 가정은 물론 건전한 1인 가구와 건전한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평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2차년도 중기연구과제이다. 1차년도(2014)의 연구(「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연구」)에서는 1인가구 사회의 도래와 법적 과제 및 전반적인 법제 정비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2차년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민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별 법령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법 분야의 1인가구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포섭되고,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도 별도의 법리가 요청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에 가족공동체의 해체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서 1인가구의 문제는 민사법상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가족법 및 민사법 분야를 중점으로 하되, 생명, 신체, 자유 등 사회안전망과 직결되는 분야도 관련 연구로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 가족제도 변화에 따른 가족법 이론의 보완 및 성년후견제도, 양자법 등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적으로는 1인가구의 법제적 문제를 정책 수립, 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1인가구를 포함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크게 4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1인가구 사회의 법적 과제 및 쟁점 분석 및 유형화 부문이고, 둘째 1인가구 사회의 법적 과제 부문, 셋째 1인가구사회의 새로운 법현실과 법리 분석 부문,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한 법제개선 방안 부문이다.

1인가구 사회의 법적 과제 및 쟁점 분석 및 유형화 부문에서는 ① 1인가구 사회의 법적 과제와 그 유형, ② 1인가구 사회에서의 민사법적 과제와 선결적 요건 등을 분석한다.

1인가구 사회의 법적 과제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첫째, 무연고자인 1인가구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연고자 관련 법령 현황, 무연고인 1인가구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법제 보완사항을 마련한다.

둘째, 보호자제도이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현행 보호자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보호자 관련 법령 현황, 보호자의 법적 성격 및 1인가구의 보호자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1인가구에 대한 행위능력제도의 보완이다.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등 사적자치의 확장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행위능력자인 본인을

전제로 한 대리·위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고령 1인가구의 임의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핀다.

넷째, 1인가구의 성년후견제도 보완이다. 1인가구사회에서의 후견문제, 1인가구사회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1인가구사회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등을 고찰한다.

다섯째, 1인가구와 관련된 입양제도이다. 입양제도가 통상적인 가족공동체를 상정한 제도로서 자(子) 본위의 현대 입양제도 내지 양친 중심의 입양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입양제도가 1인가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와 그 보완점을 살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보호법」상의 대리양육제도 확대 문제, 비혼·미혼 1인가구의 養親 適格 문제, 비혼·미혼 1인가구에 의한 입양과 파양, 비혼·미혼 1인가구에 의한 친양자 등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살핀다.

여섯째, 1인가구의 재산관리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1인가구의 재산관리, 1인가구의 재산관리인과 성년후견인, 1인가구 재산의 신탁관리 등이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일곱째, 1인가구에 대한 상속제도이다. 좁은 의미의 1인가구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상속법상 과제, 1인가구의 특별관계인 등과 개선점을 살핀다.

끝으로 유사가족공동체에 대한 법적 과제이다. 1인가구사회의 혼인 제도이다. 새로운 형태의 유사 혼인 형태나 새로운 유사 가족형태의 출현에 대한 법적 과제를 고찰한다. 1인가구와 계약결혼, 1인가구와 비친족동거가구, 고령자의 혼인법상 과제 등을 관련문제로 고찰한다.

1인가구사회의 새로운 법현실과 법리 분석 부문에서는, ① 가족제도상의 법리와 비가족제도상의 법리, ② 1인가구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족제도상의 법리와 법제, ③ 새로운 사회공동체 내지 구성원으로서의 1인가구의 법리 등을 조사·분석한다.

법제개선 방안 부문에서는 i) 무연고 1인가구 관련 법제 개선방안, ii) 보호자제도의 개선방안, iii)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 iv) 재산법제 및 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선행하는 1인가구 부문의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하므로 별도의 실태조사 방법론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문헌연구로서 주요 연구논문 검토 및 관련되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사회의 새로운 가족법, 민사법적 문제 변화와 유형 조사 분석하며, 1인가구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 법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쟁점의 정리와 대안의 마련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회의 및 관련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1인가구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입법 정책연구로 수행한다.

## 제 2 장 1인가구의 민사법관계의 제도적 미비점

### 제 1 절 가족관계의 변화와 1인가구의 쟁점

1인가구는 가족의 기능이나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어 가족관계가 붕괴되거나 분할된 것이므로, 가족의식이나 개인의 관계성 정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결혼제도의 후퇴나 약화, 이로 인한 부부의 가족중심기능의 변화 등은 개인주의 성향의 확대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2030 가족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가족 내에서 개인들이 존중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느슨한 가족형태’를 가장 희구하는 시나리오로 선정하고 있어 개인화 경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sup>2)</sup>는 연구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회가 수용하는 개인화 및 다양화의 수준은 사회정책의 수준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개인 삶의 형태나 가족생활에 영향을 준다. 사회정책이 가족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권리 단위로 재고되는 경우 사회는 보다 개별화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정책 수립 시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의 변화요인은 단순히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를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법과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sup>3)</sup>는 연구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한 조사에서는 “현재 본 조사 참여자의 선택적 비혼으로 지속적으로 비혼을 유지할 가능성에 해당하는 비율은 24.4%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개인적, 경제적 조건의

2) 장혜경 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92면.

3) 장혜경 외, 전체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193면.

변화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sup>4)</sup>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5)</sup>

이는 비혼의 1인가구가 상당한 비율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으로 1인가구가 해소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결혼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보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동거, 사실혼)’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6)</sup>는 것은 좁은 의미의 1인가구와는 달리 비결혼비친족동거의 형태 증가라는 새로운 유사 가족형태의 등장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은 이를 향후에 어떻게 법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규율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낳고 있다. 민사법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아직 비혼동거인은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고 가족이나 친족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규율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를 넓은 의미의 1인가구에 포함시킨다면,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sup>7)</sup>

1인가구의 확대와 관련하여, “미래의 한국가족정책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 이때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집단(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개별 지원이 존재할 것이며 사회적 권리의 개별화는 개인 삶의 선택과 가능성을 촉진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개선하지만 동시에 정책이 오로지 개인적 측면

4) 이성은 외,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87면.

5) 아울러 이 조사에서는 결혼경험 및 결혼/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 응답자의 92.45%가 결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혼 및 사별은 7.6%(42명)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결혼 경험이 있는 7.6%에 해당하는 응답자 중 이혼이 78.6%, 사별이 11.9%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6) 이에 비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은 41.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36.7%가 동의하고 있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도 29.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성은 외, 전제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89면.

7) 위 조사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동성 가족 공동체 혹은 지역 단위 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가족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만을 목표로 삼아 가족결속을 위협하게 된다.”<sup>8)</sup>는 전망 역시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에 관한 전망은 1인가구를 둘러싼 법현실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사법상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내지 가중치를 추산할 때에 현행 표준가구 중심의 가족법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를 아울러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가족법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발생으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및 민사관계법에서의 규율은 보완할 점이 많다.

민법 일반은 개인주의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고, 가족법은 표준가구를 기본으로 한 가족제도를 혼인, 친자, 친족 및 상속의 부문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법 일반에서 1인 가구의 문제는 행위능력의 보충과 일상가사대리의 보완, 사무관리의 보충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특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행위능력의 보충은 후견인제도와 임의대리인 및 위임제도의 활용으로 이루어지지만 1인가구의 경우에는 이들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후견심판을 청구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가 1인가구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청구자의 기여는 후견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임의대리인과 위임은 본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역시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1인가구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실질적인 행위의 불능 내지 업무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완

8) 장혜경 외, 전계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193면.

하거나 보충하여 줄 이른 바 ‘보호자’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1인가구의 경우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인의 개인적·인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보호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 재해나 사고를 당한 경우, 그밖에 공법적 관계에서도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1인가구의 경우는 그 본질적 문제로서 보호자를 수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1인가구의 실종과 사망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절차법적, 행정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적 관계로서 실종과 사망에 관한 법률관계가 사적자치의 영역을 벗어나 공법적, 사회적 법률관계로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이 없으므로 실종 또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적 영역에는 없게 된다. 따라서 공적 부문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관여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사 등 사체의 처리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무연고자로 되며, 이 경우 사망의 발견, 확인, 사망신고, 화장 등의 법적 절차와 관련자에 관한 규율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관련 규정도 산재되어 있다.

상속법 역시 상속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법제이다.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적 규율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제도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법제가 없다.

1인가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많은 부문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1인가구의 특성에 기인한 사법적 문제의 보완을 몇 개의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행정법 분야의 법제 보완의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다.



## 제 2 절 개별 법적 과제

### 1. 무연고자 관련 법적 과제

무연고자는 당연히 1인 가구에 해당한다. 반대로 1인가구라 해서 모두가 무연고자인 것은 아니다. 무연고자인 1인가구의 경우에 통상적인 제도적 장치가 작용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이들 1인가구 중 무연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 내지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첫째, 무연고 1인가구의 현황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관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연고자 및 무연고 1인가구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 관리의무 자체가 없으며, 기본적인 조사의무도 법령상 의무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연고자의 확인 또는 수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보호자」와 무연고 1인가구의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관계 내지 구분이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셋째, 민법상 후견인제도는 공법상의 무연고 1인가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 (1) 무연고자제도의 법리

‘무연고자’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자이므로 가족공동체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가족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공동체의 법리



에 따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가족공동체의 법리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사회의 代親理論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

개인주의나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서 본다면, 반드시 국가나 사회 등에서 개인의 보호자 역할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그러나 공공복리나 기본적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사회의 책무나 의무가 있다.

연고자제도는 일상가사대리를 포함한 대리제도나 위임계약 등을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가족공동체 법리의 외연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즉, 무연고자에 대한 공법관계가 사회공동체 법리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법리가 확장되어 국가 등의 책무나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2) 무연고자 관련 법령 및 법률관계

### ① 무연고자의 정의

법령상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규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령상으로는 「‘연고자’, ‘특별연고자’, ‘보호자’ 등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또한 연고자 등의 개념을 반대해석한 결과이며, 반드시 동일한 범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각 법령상 연고자, 특별연고자 등을 규정 취지가 동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대표적이다. 동 조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로 정의하고 있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같은 법률 제2조는 연고자에게 사망한 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sup>9)</sup>는 점, ‘특별관계인’으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종전의 민법 중 호주상속권 내지 현행 제사상속권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다. 즉 민사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호주상속권과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적 관계에 있게 된다.

위의 각목 중 「가 ~ 바」의 관계자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중 「인척을 제외한 친족」<sup>10)</sup>과 동일한 범위에 있다. 가족의 범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른 가족법의 개정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0) 여기서 ‘인척을 제외한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제777조제1항제2호)를 말하며, 이들은 친족 중 인척에 해당한다.

결국, 현행 개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연고자’나 ‘보호자’의 개념은 민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사법적 관계에서 찾는다면 「재산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는 ‘연고자’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 관계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1자녀 낳기 운동’ 이후 30년이 지나면 당시 독자(獨子)였던 부모를 둔 1자녀는 부모 사후(死後)에<sup>11)</sup>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자’가 된다. 다만,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척이 친족에 포함되므로 무연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 및 비혼 1인가구의 급증은 무연고자(4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② 연고자와 가족 및 친족

무연고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넓게 보면, 대리인이나 관리인 또는 보증인 등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해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차이가 있고, 그 법적 효력도 동일하지 아니하다.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있는 자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후견인의 선임 청구권자 중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르는 바, i) 8촌 이내의 혈족, ii) 4촌 이내의 인척 및 iii)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가족의 범위가 “i)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ii)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779조 참조)인 것과 차이가 있다.

11) 자연사는 평균수명이 고령사회로 됨에 따라 상당기간 늦게 발생하지만, 병사(病死)나 사고사(事故死)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연고자의 증가 비율을 급격히 높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인의 선임 청구권자 중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며, 무연고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친족은 ‘4촌 이내의 친족’ 즉 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해당한다<sup>12)</sup>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1인 가구의 경우에 비혼인 경우에는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생계를 같이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4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4촌 이내의 친족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연고자(보호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1인가구의 경우에 연고자의 범위에 후견인을 포함하여 무연고의 경우를 축소시켜야 한다. 물론 이는 성년후견인제도의 활성화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 <표>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자 격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본 인	x	o	o
친 족	o	o	o
후견감독인	o	o	o
이해관계인	o	o	o
검 사	o	o	o
지자체장	o	o	o
가정법원 직권	o	o	o

12)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만을 포함하는데,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인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반영한 민법 중 가족에 관한 규정 제779조 및 친족에 관한 제777조의 규정 개정이 있기 전에 개별 법령에서 ‘4촌 이내의 친족’을 답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 2 장 1인가구의 민사법관계의 제도적 미비점

자 격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x	o	o

<관련 규정>

-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 민법 제932조
- \* 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 민법 제936조제2항
- \* 한정후견인의 선임 청구: 민법 제959조의2제2항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1인가구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개신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1인가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등록제도가 없고,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신고나 조사·등록제도도 없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를 인지한 경우이며, 소송의 진행 및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정신장애자, 노령자 특히 무연고자의 일상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장을 청구권자로 추가하는 방안은,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무연고 1인가구 일반에 대한 법제도의 보완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취지가 정신장애자나 노령자 등의 일상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신상보호 내지 개호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 2. 적용 법률관계의 유형 및 문제점

대상자나 의무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연고자·보호자와의 관련성 또는 이들의 유무를 판단요소로 하는 법률관계 및 이를 규율하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i) 「아동복지법」 : 아동의 보호·양육·교육

이 법에서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및 감독의무’에 관한 것이며, 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해당한다. 민법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이 가지는 권리의무는 ‘미성년인 자의 보호, 교양, 감독’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범위를 「일정한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고자’와는 구별된다.

‘1인가구로서의 아동’의 개념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1인가구의 문제보다는 아동복지의 문제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 역시 같은 취지에서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보호자가 1인가구로 전환되면서 보호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시체의 처리

이 법률에서 연고자의 의미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한 처리」와 관계된다. 이는 1인가구의 사망시 그 시체의 처리와 직결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고자’의 의미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사상속권자 내지 종전의 호주상속권자의 의미와 동일한 맥락에 있으며, 여기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공공기관이 공적 의무로 연고자에 포함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연고자인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제2조의2). 이들에 대하여는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집한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제33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문제는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위의 장사정보시스템에 제외되고, 장사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제33조의3). 그러므로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개인묘지로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사망자의 통계나 무연고분묘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충분한 정책정보가 흠결이 있게 된다는 점을 야기하게 된다.

**i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이 법률에서는 시체해부명령(제20조)과 관련하여 시체해부시 연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연고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고자를 인용하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의 시체해부는 1인가구이 시체해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의무가 중요하며, 실효적 규정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iv) 「검역법」 : 검역조치**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물건, 시체 등에 대한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소장이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검역법 제15조).

검역조치의 하나로서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연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참조). 일정한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해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고자가 멀리 있거나 살고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기타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긴급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승낙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긴급 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해부는 승낙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검역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v) 「검찰사건 사무규칙」 : 신병인도**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동 규칙 제71조제2항). 신병인도조치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게 하는 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1인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병인도조치대시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것으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

**vi) 「경찰관직무집행법」 : 응급구호**

경찰관은 응급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응급구호의 요건 중 하나로서,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임이 명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한편, 응급구호조치를 한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조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제4항).

위와 같이 연고자나 보호자의 정의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에 응급구호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vii)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임산물의 매각**

산림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경우가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이다.

구체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li><li>2.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별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별채를 대행한 자</li><li>3.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별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별채를 요청한 자</li></ol> |
|--|

위의 연고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연고자와 달리, 일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1인가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연고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법제정비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viii) 「귀속재산처리법」 : 귀속재산의 우선 매각**

이 법은 1949. 12.19 제정·시행된 법률이므로 ‘연고자’에 관하여 가장 일찍 규정한 법령에 해당한다.

귀속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선 매각 대상자로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 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등과 함께 연고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귀속재산과의 연고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친족 내지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연고자와는 차이가 있다. 1인가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민법 제1057조의2의 특별연고자와도 차이가 있다.

**ix)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유골인수**

이 특별법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유족과 친족 중 근친 및 연고자 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제4항).

유족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와 다를 바가 없다. 즉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유족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제1호), 부모(제2호), 손자녀(제3호), 형제자매(제4호) 과 동일하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 친족, 근친, 연고자를 사망자의 유골 인수자로 정하고 있다.

유골 인수자에 포함되는 연고자는 다른 법령의 경우와 달리 가족, 친족을 제외한 다른 특별 관계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에 유골 인수자가 없게 되는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x)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의 납부**

상속세 납부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상속세법 제3조). 특별연고자는 가족 내지 친족과 관계없는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개념이므로 1인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

**xi)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체인수자의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분증·유류물품 등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하여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사망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시체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법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유족의 승낙없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체의 인수자를 탐문, 확인하도록 의무를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연고자’에 대하여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으로 연고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한 채로 해석에 맡기고 있다.

변사체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에1항에 따라 해부할 수가 있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시체의 해부와 관련하여 시체의 제공 및 해부금지기간이 있으므로 인수자의 존재 확인이 중요하다.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부할 수가 없으므로(같은 법 제4조제1항) 예외적으로 유족의 동의 없는 해부의 경우에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이 경우에도 인수자를 찾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2회 이상 시체제공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60일의 해부 금지기한을 두고 있다(제2항 및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시체 제공 증명서를 발급하는 바,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갈음한다(제12조제4항 및 제5항).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없으면,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증명서’를 시체 제공 증명서로 갈음하게 된다(제5항)는 점에서 무연고 1인 가구의 시체 처리와 연결된다.

시체의 인수(연고)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제1호)와 사진·유류품 등의 3년간 보관 등과는 별도로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시체의 인수나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의과대학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여 시체를 화장하고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참조).

이 법률에서 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3조의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 개념 역시 추상적이며, 연고자와 같은 개념인지, 어떤 법령의 연고자와 같거나 유사한 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1인가구가 사망한 경우,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시체의 처리가 다르게 된다.

#### **xii) 「아동복지법」 :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는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제15조제1항제2호). 이 법에서는 보호자와 연고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1인가구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호에 명시하고 있지만, ‘연고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제3조3호)이다.

생각컨대, 동 정의규정은 ‘친권자·후견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의무 없이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해석에 맡기고 있다. 연고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그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법령상·계약상 의무없이 아동의 보호·양육·교육을 하는 사람」을 특정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보호자와 연고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계약상 의무없이 아동의 보호·양육·교육을 하는 사람」과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인가구의 사람이 보호대상아동을 대리양육하고자 할 경우에 연고자의 개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실익이 있다. 비혼 1인가구의 경우에 입양이란 방법보다 대리양육을 선호할 여지가 있다. 물론 1인가구가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적 의미의 1인가구에서 벗어난다는 문제는 논외로 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하나로서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1인가구에게 대리양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향후 급증하는 1인가구 문제의 해결방안 중 준가족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리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양육자가 보호자 중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연고자에서 보호자로 그 법적 지위가 전환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xii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위탁

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제47조제1항제6호 참조)고 규정할 뿐,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연고자’ 역시 아동보호법의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특별법은 아동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며,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xiv) 「재해구호법시행령」 : 장사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자의 장사 지원에 대하여,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를 행한다(영 제2조제4호).

장사의 지원을 연고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려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고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재해구호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1인가구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르고, 연고자가 있으면 그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게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를 치러야 할 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는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같은 법 제2조의 연고자에게 매장 등의 장례 의무가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족이 아닌 연고자에게 시체의 인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고자의 개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들이 자의 관계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으로서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xiv)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분묘 등의 정리

분묘 등의 정리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의 감독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안의 분묘 등에 대하여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에게 이장(移葬)이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이 경우 분묘의 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연고자의 개념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장명령 대상자를 확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매장 또는 화장 등과는 달리 이장의 경우에는 연고자에 이장명령을 하더라도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장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장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사업을 사업기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을 알 수 없는 분묘 등은 이장공고 후 감독청이 이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장공고는 일반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바, 이는 특히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로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고의 실익이나 연고자에 대한 대집행의 의미가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분묘 등의 관리가 묘지의 일제조사로써 무연분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무연분묘 일제조사는 일간신문 공고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한, 그 한계가 있다. 공원묘지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분묘의 경우에는 묘지의 설치 이후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장사(葬事)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지목



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절차없이 매장되므로<sup>13)</sup> 지적공부나 묘적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 과정에 감독청에 의한 무연분묘의 이장이나 대집행에 의한 이장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성 내지 경제적 부담 등이 증가하고, 장례문화나 관습에 어긋나는 경우도 나타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1인가구 정보의 수집 및 공적 활용의 문제는 충돌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도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국가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 xv)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노숙인 입소심사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이 입소신청을 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심사를 요청하게 된다(제11조제1항).

입소심사는 ‘연고자 유무’에 대하여 조사 상담한 결과를 노숙인의 인적사항 등과 함께 기재한 입소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제11조제1항).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와 관련되는 연고자의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연고자의 대상 범위가 법령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

13)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중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는 의제조항을 두어 절차의 중복은 해소되어 있다.

## xvi)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전자채취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참조).

보호시설<sup>14)</sup>의 무연고아동은 「미성년인 고아」,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다.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은 두 가지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미성년인 고아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제3조제1항), 그 밖의 아동은 부양의무자로서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있다(제2조제2호).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제3조제1항제4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고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개념을 사용하든, 연고자의 개념을 명시하든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14) 보호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호자 개념이 일반적인 연고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아니함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xv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미수금 대급 청구**

응급의료에 관하여 발생한 미수금의 대지급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미수금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참조).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및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참조).

여기에서 ‘보호자’와 ‘연고자’의 개념상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무연고자로 확인」과 「보호자의 미납확인」이 갈음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로 보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다. 기술한 바와 같이 보호자와 연고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xviii)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유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영 제2조제1호)에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무연고자의 확인을 경찰관서에서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다른 법령에 없는 규정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법 제3조제1항제9호)은 실질적으로 경찰관서를 거치기 때문

에 법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관리로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바, 노숙인 등의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의 업무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경찰관서에서 접속가능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 결과 생산되는 등록전산정보자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sup>15)</sup>

거소나 주소의 확인이 아울러 필요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을 모두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무연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xix) 「인구동향조사 규칙」 : 자료 제출

실지조사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통계법」 제26조제1항).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5조제2항).

「인구동향조사 규칙」은 ‘무연고 사망자’를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해석상 추정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무연고 여부의 결정 기준이 다른 법령과 구별된다. 조사 작성 의무 기관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고 있는 점은 향후 무연고자 여부의 판단 내지 조사 기관을 체계화할 때에

15)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등록전산정보자료)는 일정한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통계법」에 의한 통계가 다른 정부의 정보자료와 상충되거나 불일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와 ‘무연고이주’로 구분하면서, 연고이주는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제4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고는 친족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개념에 속한다.

◆ 보호자 관련 법률관계

법률관계	개 념	관련 법령조항
아동 보호 교양 감독	친권자, 후견인, 업무·고용관계상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응급구호	(정의 없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보호조치	(정의 없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유전자검사의 실시	(정의 없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 연고자 관련 법률관계

법률관계	개 념	관련 법령조항
시체 등의 처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부명령	(위와 같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역조치	(위와 같음)	「검역법」 제15조
신병인도조치	(정의 없음)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1조제2항

법률관계	개 념	관련 법령조항
응급구호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국유임산물 수의매각	“특별한 연고” : 대부, 대행 벌채 요청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영 제27조제1항
귀속재산 우선매각	(정의 없음)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유골 인수	유족·근친 이외의 자 (정의 없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상속재산의 분여	특별연고자 (정의 없음)	「민법」 제1057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위와 같음)	「상속세법」 제3조제1항
시체인수자의 확인	(정의 없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
보호조치	(정의 없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sup>16)</sup>	(정의 없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제6호
장사(葬事)의 지원	(정의 없음)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조제4호

1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도록 판사가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 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명령하는 것임(같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 참조).

제 2 장 1인가구의 민사법관계의 제도적 미비점

법률관계	개 념	관련 법령조항
분묘 등의 정리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4조제1항
노숙인의 입소심사	(정의 없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미수금 대지급	(정의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제1호
수급권자	(정의 없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료의 제출 등	(정의 없음)	「인구동태조사규칙」 제5조제2항
해외이주	(정의 없음) *혼인, 약혼, 친족관계 기준	「해외이주법」 제4조

### 제 3 장 1인가구의 사망 관련 법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고자의 개념이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입법례를 그냥 답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1인가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출생의 문제는 없고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사망 관련 법률관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는 i) 사망확인, ii) 무연고의 확인, iii) 사망신고, iv) 시체 처리(화장, 해부, 유골인수 등), v) 잔여재산의 처분 등이다.

1인가구가 이러한 ‘권리능력의 소멸’과 관련되는 법률관계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인 의무자가 권리자가 없다는 점이다. 즉, 현행법령에서는 가족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공동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규율에 흠결이 발생한다.

#### 제 1 절 사망의 확인

사람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므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가지는 지위는 상실한다. 따라서 전속적 권리는 소멸하고, 이전적 권리는 승계된다. 따라서 이전적 권리와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할 사람을 가능하면 빨리 확정하여야 거래질서의 안정 내지 법률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망의 처리는 「생존여부」와 관련하여 사망신고와 관련 공부상에 사망으로 기재함으로써 일응 행정상 종료되지만, 이후 시체의 처리 단계는 남는다. 사망의 처리는 먼저 사망의 확인으로 출발한다.

사망의 확인은 ‘사망자 발견’과 ‘사망자의 생존여부 확인’ 및 ‘사망의 원인 조사·확인’으로 이어진다.



사망의 확인은 사망신고 의무자와 관련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망신고는 자연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사 등의 경우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망의 확인을 의사 내지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의미이며, 예외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결국, 사망신고의무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신고의 의무자인 「동거하는 친족」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망신고 의무자가 없다. 임의적 신고자격자로서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

생각건대, 1인가구의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을 임의적·보충적 신고자로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 제2항에 1인가구에 관한 단서를 두어 예외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1인가구는 연고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이지만, 일반적인 무연고 시체는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원 자체는 명백한 1인가구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1인가구가 무연고인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는 무연고 시체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현행 법령은 무연고 시체는 자연사이외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의 자연사를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행정절차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본다면, 1인가구의 사망신고 의무자의 확대 필요성은, 시장 등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와 행정절차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행정통계의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도 사망의 확인과 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망신고 없이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는 것은 관련 공부의 등록 및 ‘인구동태조사’ 등과의 정보 오류 내지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체 처리와 관련된 공적 장부는 「묘적부, 매장 등의 관리대장」이며, 매장, 화장, 개장, 묘지 설치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정보로 관리한다. 최종적으로는 통계법에 의한 인구동태조사와 연계되며, 주민관리와 인구와 관련된 각종 정책통계자료의 가공에 활용된다.

## 제 2 절 장사(매장, 화장, 납골 등)

### 1. 시체의 인수

사망의 확인은 사망진단 또는 사체검안으로 이루어진다.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의과대학 측에서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 제공을 요청”(「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행법령은 시체의 인수와 관련하여 a) ‘인수자가 없는 시체’(「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b)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체 인수 의무자 내지 권리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연고자가 시체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그러한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까지의 관습상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 1/4 이상이 1인가구가 되는 사회에서는 명시적

으로 거부하거나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신에 관한 권리는 민법상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그 권리는 종전의 호주상속권자나 현행의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등의 주재자<sup>17)</sup>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인가구가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자인 친족’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체계화·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2. 시체의 처리(해부·장사)

1인가구의 시신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은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시장 등이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여기에서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관련 행정기관 등의 장」 및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이다(같은 법 제2조 참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관리자를 의미하므로 친족을 기준으로 하는 연고자와는 구분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친족인 연고자는 없다. 따라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일단 사망 당시에 법적 의무나 계약상의 의무로 사망한 자의 시체를 점유하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관할 시장등의 시체 처리 의무가 연고자

---

17) 민법은 피상속인의 시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다. 분묘, 제구 등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피상속인의 시신에 대한 처분권도 일단 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물론 유족에 속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개별법령에서 ‘유족’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후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고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유골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특별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연고자가 아닌 친족은 동거하는 경우에만 사망신고의 의무가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연고자가 아닌 친족뿐만 아니라 연고자도 시체를 장사지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체를 인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결국, 1인가구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치료·보호·관리시설<sup>18)</sup>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시체를 인수할 의무가 있는 다른 연고자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고자<sup>19)</sup>가 없는 시신을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온전히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들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신고 의무자와 매장·화장 등 장사의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매장·화장 등 장사의무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1인가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체의 인수의무자가 없다. 장사의무자 역시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유족이 없는 1인가구는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와 관련하여 승낙을 받을 유족이 없는

18)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체의 해부는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유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9)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포함한 연고자의 개념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무연고 시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제3 장 1인가구의 사망 관련 법제

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의과대학에 시체의 해부 목적으로 제공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체의 최종적인 처리는 친족이 아닌 연고자로서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맡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구·교육 목적으로 해부에 제공된 시체의 처리는 ‘의과대학의 장이 「운반비, 화장비 그 밖에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면서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계속 증가하는 1인가구의 경우에 현행법상 연고자로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사실상 시체 처리를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연고자가 없는 시체로서 유족의 승인없이 해부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에 제공하게 하고 그 의과대학의 부담으로 시체를 화장·봉안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 행	개정시안	비 고
<p>제 4 조(유족의 승낙)</p> <p>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1의2 (생 략)</p> <p>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u>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u></p>	<p>제 4 조(유족의 승낙)</p> <p>① (현행과 같음)</p> <p>1. ~ 1의2(현행과 같음)</p> <p>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u>연고자 중에서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체 인수자의 범위를 연고자로 명확히 함.</li> <li>- 해부기증을 확대하고 의과대학의 부담으로 시체를 장사함.</li> </ul>

1인가구의 경우에, 생전에 연고자가 없음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무연고자 대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신고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처리 후 공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연고자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무연고 시체를 보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아울러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신고를 받은 즉시 이를 등기관서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 중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 및 총괄청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연고자의 사망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 접수시 지체없이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무연고 1인가구자의 사망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후 국가로 귀속됨을 예고등기나 부기등기로 기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제 3 절 1인가구 잔여재산의 귀속

#### 1.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문제점

##### (1) 재산 처리 절차상 문제점

1인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1인가구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4촌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053조제1항). 아울러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제1055조제1항)하므로, 반대해석상 상속인의 부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민법 제105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1인가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은 i) 일반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ii)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거쳐, iii)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1인가구는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여부

1인가구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1053조의 보완이 필요하다. 1인가구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상속인(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중 청산과 분여를 거쳐 남은 재산은 민법 제10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다.

문제는 1인가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재산의 보존과 처리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선임 청구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1인가구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자

현행법상 무연고자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사망한 때에는 결국 사망 신고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게 된다.

사망신고 의무자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가구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상속인의 부존재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이 전자정부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잔여재산의 귀속 법리

1인가구의 사망은 상속인의 부존재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국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이 경우의 국가의 지위는 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고, “무주인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는 무주물(無主物)의 귀속 법리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52조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무주(無主)의 동산은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55조의 규정은 이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최종적인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없는 물건 및 금전의 최종 귀속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속인으로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



결국 1인가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19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수행하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 (5) 국가 귀속 절차의 근거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에 대하여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편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귀속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순간 국유재산으로서의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는 민법에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 내지 처분청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조사, 사전관리 등에 대하여 흠결되어 있다.

1인가구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변동에 따른 재산관리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부동산물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금 및 동산 기타 재산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 승인으로 종료하지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절차(제105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한 이후에 남은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흠결되어 있다.

담보물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단순한 채권자이므로 민법 제1059조는 국고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20)</sup> 반대해석상 담보물권자는 국고 귀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이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물권법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며, 「국유재산법」과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법」은 상속인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이 민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과 민법 제1053조의 관계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 2. 특별연고자와 재산분여

1인가구의 잔여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인가구의 사람이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1인가구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057조의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일정한 자<sup>21)</sup>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53조). 공고한 날부터 3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그 기간내에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056조 제1항, 제1057조).

20) 민법 제1056조는 “가정법원에 의하여 분여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산을 위한 채무확인 조치에 불과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1)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를 말한다.

1인가구의 경우는, 1인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의 조부를 알 수 없는 때’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민법 제10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상속인수색의 공고가 불필요한 경우이다. 오히려 ‘특별연고자’ 수색의 공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연고자 수색의 공고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완할 사항이다. 1인가구의 상속권자가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일 것) 이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도록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분여는 국가에 귀속될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민법 제1057조의2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가구와 관련되는 경우는 비친족동거나 요양간호 등의 경우가 예상된다.

절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보완사항은 없다. 다만, 분여 청구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는 것 등이 실효성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가구의 상속재산(잔여재산)의 처리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 분여청구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 처리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1057조의2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현 행	개정시안	비 고
<p>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u>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u> &lt;개정 2005.3.31.&gt;</p> <p>② 제1항의 <u>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거나, 상속인이 <u>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여 줄 것을 청구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u>재산 분여 청구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여청구 신청하도록 공고하여 특별연고자를 보호</li> <li>- 1인가구의 경우, 상속인수색공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간편화</li> </ul>

### 3. 잔여재산 중 부동산의 처리

사망한 1인가구의 잔여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재산 분여를 하고 남은 재산은 ‘소유자가 없는 재산’이 된다.

소유자가 없는 재산 중 부동산은 민법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중안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은 일단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이 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국가

귀속'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주(無主)인 부동산」에 대한 민법 제252조제2항의 규정, 즉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개별규정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은 이러한 일반적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특별히 1인가구와 같은 상속인이 없는 잔여 부동산의 귀속에 관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따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053조는 i)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ii) 공고한 날로부터 3월이상 상속인 존부 확인, iii)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상속인에게 권리 주장하도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는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의 규정보다 훨씬 짧은 6개월의 신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공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은 이러한 ‘가정법원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와 충돌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 중 공고기간은 민법 제1053조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공고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신고기간도 ‘1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2조제1항). 사망한 1인가구의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은 「동산」, 현금, 소유권 이외의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해당된다.

사망한 1인가구의 잔여 재산 중 동산은 민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점한 자가 취득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 법리 중 ‘무주물 선점’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사망한 1인가구의 잔여 재산을 ‘무주물’로 보아 무주물 선점의 법리에 따라 그 소유권의 변동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인가구의 잔여재산 귀속은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권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무주물의 귀속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잔여재산에 대하여 직접 관리·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법은 무주물 선점의 법리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인가구의 잔여 재산은 ‘무주물 법리’가 아니라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 법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무연고자의 유류품의 처리」로 우선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무연고자의 유류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이를 다른 특별법에 의한 무연고자 관련 규정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5. 잔여재산의 처리와 사무관리

1인가구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긴급사무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수는 없다.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존재하는데, 1인가구의 잔여재산 처리는 ‘본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사무관리의 요건을 벗어난다. 물론 상속인의 존부가 확인될 때까지 잔여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민법 제734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유자 없는 재산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사무관리가 해소되고,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무관리가 개시되면, 관리자는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민법 제736조)와 관리계속의무(민법 제737조)가 발생한다.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 및 무과실손해배상청구권(제740조)도 인정된다. 이러한 의무 및 권리는 1인가구의 사망 및 그 잔여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본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1인가구의 잔여재산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의무를 가지는 자’나 ‘사무관리에 기초한 관리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리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앞의 무주물 선점 법리에 따라 1인가구의 잔여 동산을 귀속하게 하면 상당한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

1인가구의 잔여 재산은 1차적으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1인가구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종의 사무관리와 유사하지만, 민법상의 사무관리가 아니라 공법상 공공기관의 의무로 보는 것이 법리에 맞다.

‘시·읍·면의 장’의 관리의무는 「가정법원에 의한 잔여 재산의 분여」 후에도 남게 되는 재산의 처분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분여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므로 공공시설 등예의 기부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우선 처분하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무연고자 등의 사망 처리를 한 시장 등은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도록(같은 법 제90조)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의 잔여재산 관리는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제 4 절 1인가구의 사망과 부동산 이용 법률관계

### 1. 주택임대차와 1인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은 1인가구에 특별한 법률관계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다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경우에는 1인가구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이 규정은 1인가구에는 적용이 없다. 가정공동생활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 문제에 보완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제9조제2항).

승계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론 임차권이 소멸한다. 승계권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가 귀속될 사람이 불명확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연고자 중 사실상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의 주택임대차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상속인도 없으며,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차의 존속여부 및 승계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귀속 문제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임대차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없는 경우」와 「주택임대차의 소멸」은 다른 쟁점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규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임차인 사망과 관련된 임대차 소멸 시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소멸사유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의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은 문제는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청산이며, 임차주택의 반환 문제는 임차인이 사망으로 점유가 소멸한 경우 및 임차권의 승계인이 없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반환 행위가 불필요하다. 반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반환받을 권리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1인가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도, 승계인도 없는 상황이다. 임차보증금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임차보증금의 처리에 관하여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권리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고, 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임대인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은 비록 채권소멸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당이득이다. 소멸시효기간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향후 1인가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고려할 때, 주택의 소유보다 이용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아울러 감안한다면, 주택임대차를 비롯한 임대차의 경우에 1인가구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청산의 문제가 법률적 비중을 더해 갈 것은 명백하다. 물론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러한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의 경우에 대비한 청산조항을 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의 법률생활 문화 내지 거래관행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고 체결한 사례가 없다.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조항은 없다.

1인가구의 사망시 그 장사 등에 관한 사항, 1인가구의 잔여재산의 처리 등은 그 소관을 사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민사법적 문제는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밖에 재산관리, 시신처리, 유류품관리 등 행정적 사항은 주민관리 소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원적 체계성을 가지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에서 1인가구 임차인이 상속인 및 승계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내지 기관의 자격으로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 또는 승계인의 존부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권리자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상속·승계 및 청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시·읍·면에 귀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2. 전세권과 1인가구의 사망

주택임대차에서 1인가구인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 문제는 전세권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한다.

물권인 전세권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물권편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그 승계문제가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다르게 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채권인 임차권과는 그 법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채권은 계약 당사자가 중요하지만, 물권의 경우에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사유로 특별히 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존속한다.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자 및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상속이 제한되는 승계’로 임차권을 유지하듯이, 전세권을 존속시키는 제한요건이 없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및 물권계약에 따라 존속하며, 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세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자유롭다. 용도에 따라 전세권의 설정한 내용대로 사용하면 된다.

전세권자 이외의 타인이 전세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제311조제1항)에 해당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전세권 자체는 존속하게 된다.

전세권의 소멸사유는 “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混同·消滅時效·傳貰權에 우선하는 抵當權의 실행에 의한 競買·土地收用 등으로, 소멸하게 되나 그 밖에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sup>22)</sup>

약정사유에 전세권자의 사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1인가구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1인가구인 전세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i) 전세권을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점, ii) 전세권은 계속하여 존속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점, iii)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 및 전세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협조행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 iv) 소멸청구나 소멸통보를 할 상대방(전세권자)이 없다는 점 등이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17조).

1인가구 전세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약정사유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라도, 유류품을 포함하여 잔여재산이 남아 있고<sup>23)</sup>,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불가능하다.

관리인 내지 사무관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청산업무를 수행하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의 1인가구라면 이러한 선임 재산관리인이나 민법의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사무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2) 박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265면.

23) 이 점에서 목적물 인도의 문제가 사실상 발생한다.

상속인은 물론 재산관리인도 존재하지 아니하면, 전세권의 소멸에 필요한 공동행위(등기의 공동신청 등)가 전세권자인 1인가구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로 불가능하게 된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 없이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상태의 장기화는 부실등기의 장기간 존속을 낳고, 전세권의 물권관계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인가구인 전세권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권의 소멸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상속권자의 부재와 전세권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전세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에 ‘상속인없는 전세권의 말소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전세권설정자)이 단독으로 청구한다.’는 조항을 제8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상속인의 존부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정부 3.0 전자정부시스템에 의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록이 없거나 상속인의 존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할 것이다.

## 제 5 절 사정변경에 따른 1인가구의 재산 보호

현행 민법은 제557조에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정변경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제5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에 의한 증여의 해제와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을 증여에도 인정한 것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증여가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557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없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생존재산으로서 기능하게 된 재산의 환수 방법이 없다.

1인가구의 사람이 증여를 한 경우라도, 사정변경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게 된다. 현행처럼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해제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특히 고령의 1인가구가 경솔한 판단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을 곤궁하게 하는 결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9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현존하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① (현행 제6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증자가 수인 있으면 먼저 증여를 받은 자는 나중에 증여를 받은 자가 책임을 이행하여도 증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는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24) <삭 제>”25)

24) 현행 민법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선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르고 있다.

25)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3, 2015. 9. 9.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중 7면.

생각건대, 위의 법안처럼 증여자 일반에게 제한없이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증여계약 또는 계약의 해제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권과는 달리 가능한 한 예외규정의 해석 법리에 따라 좁게 해석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증여자’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 현존하는 이익의 반환에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4 장 해체된 가정과 1인가구의 법적 과제

### 제 1 절 1인가구의 성년후견

1인가구의 특성상 행위능력의 보충이나 사적 자치의 확장 등과 같은 부문에서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례나 별도의 보충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성년후견의 개시 요건 및 절차 중에 친족 등 가족공동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후견 내용에도 한계를 가지게 된다.

#### 1. 성년 후견 개시절차의 문제점

후견의 심판 청구는 특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의 경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며, 가정법원이 심판을 한다(민법 제14조의2제2항).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1인가구의 후견인 심판 청구 절차에서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에는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자가 ‘본인’이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년후견인제도나 특정후견인제도가 1인가구 문제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다.<sup>26)</sup>

현실적으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가구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청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26)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 대책을 마련한 법률이 아직 없다”며 “지자체가 나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성년 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법률신문 2015.9.10. 7면)은 지자체의 장이 후견 심판 청구 이외에 관련 예산의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한다면 일리가 있다.



검사는 형사사건 등 사법절차와 관련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 후견 심판 청구에 개입할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보완으로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2.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1인가구의 문제 개선에 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i) 성년후견인제도를 노인 1인가구 문제에 활용하는 방안과, ii)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 (1) 성년후견인제도의 노인 1인가구 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노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정신적·성(性)적 폭력범죄와 경제적 착취 등 노인 문제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성년후견인에게 ‘노인학대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해 성년후견인들이 ‘노인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sup>27)</sup>.

성년후견인제도의 본래 취지는 성인이지만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능력이 어려운 사람의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위의 주장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써 성년후견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정신적·성(性)적 폭력범죄와 경제적 착취 등 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7) 이는 ‘노인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엄덕수(6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의 주장이다: 법률신문, 2015.9.10., 7면.

후견인의 임무와 관련된 민법 제9조는 성년후견의 대상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하고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민법 제10조제1항)에서 성년후견인의 임무를 특별한 근거없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청구로 성년후견인에게 새로운 임무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

노인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성년후견인에게 이른바 “노인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행위의 위험 여부를 관찰하고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신속한 예방조치 △노인 박해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긴급구호조치 △이에 다른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한다”<sup>28)</sup>는 주장은 성년후견의 문제가 아니고, ‘고령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인복지와 관련한 의무로서 성년후견 지원 대책의 근거를 부여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는 경우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2)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아래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 i)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 ii)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iii)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i) 및 ii)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i)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28) 전계 법률신문, 2015.9.10., 7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자’의 개념 정의를 다른 법률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사람을 보호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년후견인과는 별도로 보호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법률관계 및 사무관계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자에 관하여 3가지 유형으로서 i) 법정 보호자, ii) 사실상 보호자, iii) 지정 보호자를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호자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인가구와 관련하여 참고할 보호자 유형은 「지명 보호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가구의 일정한 법률관계 및 사무관계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보호자를 성년후견인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거나 두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는 이러한 보호자제도를 염두에 두고 도입한 것은 아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제10조제3항)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따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제2항).

개정전 민법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피성년후견인과 개정전의 한정치산자의 개념 및 행위능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수는 있다.

1인가구의 지원 내지 보호와 관련하여 후견에서 제외되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오히려 ‘보호자’의 지원 내지 보조가 가능한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호자의 역할과 결부하면 그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원용할 수 있다.<sup>29)</sup>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의 지원 영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더하여 아래의 영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오히려 후견인보다 더 넓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된다.

- i)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
- ii) 권리의 적절한 대변
- iii) 권리침해의 위험에 대한 예방 또는 방지 조치

한편, 후견사무의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민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제4항). 이를 원용하여 1인가구의 경우에 특히 저소득의 고령1인가구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후견제도 내지 보호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중 후견인에 관한 규정에서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민법의 성격이나 규정 내용 및 방식상 곤란하다. 사회보장 관련법령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합하다.

29) 제9조제1항은 성년후견 이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한 것이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3. 후견인의 권한 및 임무 확대

노인인 1인가구의 경우에, 그 성년후견인에게 민법상의 권한 및 의무 이외에 노인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i)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행위의 위험 여부 관찰의무, ii)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신속한 예방조치의무, iii) 노인박해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긴급구호조치, iv) 이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sup>30)</sup>이다.

이 방안은 성년후견인 중 ‘노인후견인’이란 유형을 인정하고, 특별한 의무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후견인에게 친권자와 같은 「피후견인 보호 및 교양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임무 내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그 입법 형식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방식이라야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한다.

## 제 2 절 생활법률관계의 보호자 부존재

### 1. 현행법상 보호자제도

현행법령은 보호자 제도와 관련하여, 그 ‘보호자’의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한편, 보호자제도는 i)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와 ii) 보호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및 iii) 보호자를 상대로 공법상, 사법상 의사표시(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본인 이외에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보호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령은 173건 정도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검색에서 나타난다. 보호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30) 이는 ‘노인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엄덕수(6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의 주장이다. 법률신문 2015.9.10. 7면.

두고 있는 법령과 별도의 개념 정의 없이 ‘보호자’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개념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법령의 체계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의규정 없이 ‘보호자’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의미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한편, ‘연고자’와 ‘보호자’를 같은 법령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없지 않다. 이 경우에는 특히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두 용어의 정의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

보호자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례도 통일성이나 체계성을 찾기 어렵고, 용어의 정의를 두지 않고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보호 교양 감독’, ‘응급구호’, ‘보호조치’,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동의를 요청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호자의 범위와 그 법령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 상위법과 하위법령, 기본적 법률과 개별 관련법령 등으로 체계화된 관계에서 공통된 용어의 정의나 개념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화된 입법례는 보기 어렵다.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일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법령 조항	정 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모자보건법 제4조제2항	“친권자·후견인이나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2호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 조항	정 의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소년법 제2조	“보호자”란 법률상 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2. 1인가구의 보호자 보완

‘보호자’를 그 권한 또는 의무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i) 친권자, ii) 후견인, iii) 친권·후견의 대리·위임을 받은 자, iv)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관계로 친권자의 의무나 후견인의 의무와 동일 유사한 의무가 있는 자, v) 친권자·후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친권업무 내지 후견업무를 감독하는 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보호’, ‘양육’, ‘교육’, ‘감독’이 있다. 이는 그 연원을 추정하면, 민법 제913조의 친권자의 권리의무 규정과 관계있다. 동 조항은 친권자의 권리의무로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즉,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와 ‘교양’이란 추상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교양’은 「교육과 양육」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감독’은 i) 피보호자를 감독하는 것과, ii)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적법성 등을 감독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 등은 그 주의의무 위반 즉, 감독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에게 「보호, 교양, 감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들을 「보호자」라는 용어로 개별법령에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친권자·후견인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당초의 개념에 다른 개념 요소가 추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보호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개념의 차이가 발생하고, 친권적, 후견적 업무의 확대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개념을 넓힌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보호자가 원칙적인 경우라고 보여 지지만,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서 보호, 지원, 구조, 대리, 보증 등을 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입법례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호자 개념의 변화와 함께, 1인가구와 관련된 법령에서 보호자의 개념 범위는 조정이 필요하다. 1인가구 특히 성년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친권자이 없고, 특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있다.

1인가구에서 필요한 것은 제한행위능력의 보충 내지 확대보다는 생활법률관계 및 사실행위에서 지원, 보조할 사람으로서 보호자이다. 의료,



사망, 사적자치의 확대 등에서 1인가구를 대신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친족 중심의 보호자 개념에서 계약관계 또는 사실 관계에 기초한 보호자 개념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응급구호」의 경우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3호)은 긴급구호요청이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무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업장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도 생활법률관계나 긴급한 상황에서의 보호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절 불완전 가정과 예비적 1인가구

#### 1. 독거노인과 1인가구

독거노인의 문제는 고령자 문제와 1인가구 문제가 중첩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독거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데에 기인한다.

고령자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가족법적 부양제도의 문제로 대별할 수가 있다. 1인가구의 문제로서 이러한 고령자 문제와 다른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의 청구인으로서의 본인(독거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신장애자, 노령자 특히 무연고자의 일상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로 민법 제9조에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보호를 강화하였

지만<sup>31)</sup>, 이는 제도상 구현된 것일 뿐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는 그 실태에 관한 통계로 보아 의문이다.

둘째, 성년후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공법적·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독거노인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 내지 보호하여 줄 것인가가 문제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신감정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견해<sup>32)</sup>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민법 제9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도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한 정신감정을 하되, 감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제2항). 가사소송법도 같은 취지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같은 내용의 규정(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을 두고 있다.<sup>33)</sup>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즉, “본인의 의사를 확인

31) 배인구, “성년후견제도”, 『가정상담』(2015.2, 통권 378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5면.

32) 배인구, 상계 『가정상담』(2015.2, 통권 378호), 15면.

33) 배인구, 전계 『가정상담』(2015.2, 통권 378호), 16면.

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를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본인의 정신능력이나 의사표현력이 미숙하여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확인 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상태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sup>34)</sup>

이 경우 의사소통 전문가의 도움과 별도로 보호자나 연고자의 도움에 대하여 현행법령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정신상태를 판단할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의 확보나 존재여부를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 2. 조손가정과 1인가구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고령자가 사망한다면 1인가구로 전환된다는 점<sup>35)</sup>에서 잠재적 1인가구에 해당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손자의 후견뿐만 아니라 고령자인 가구주(세대주)의 후견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현행법령은 조손을 일괄하여 모두 1인의 후견인이 후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다. 즉, 후견대상에 대한 후견개시는 법원에 대한 청구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은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동일 가구원(세대원) 내지 가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후견인이 다를 수밖에 없고, 관련법령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그 피후견인인 사람의 미성년가족에 대한 후견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으로 그

34) 배인구, 전제 『가정상담』(2015.2, 통권 378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면~17면.

35) 물론 손자가 성년이 되어 결혼한 경우라면 분가하여 조부·조모가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부·조모가 사망하여 미혼의 유족인 손자가 1인가구로 되는 경우로 예상할 수 있다.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수밖에 없지만, 이른바 조손가정의 경우에 그 조부모에게 성년후견·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책적,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 3. 소년소녀 가장 관련 법적 과제

소년소녀가장은 i) 연고자가 없거나, ii)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지만 실질적인 친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없는 경우, iii) 4촌이내의 친족은 있지만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 iv) 주거를 달리하는 자발적, 임의적 후견인은 있으나 법원에 의한 선임 후견인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소년소녀가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1인가구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혼재하지만, 가족공동체의 법리에 따른 보호, 부양, 대리, 친권이나 후견 등의 제도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족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법상의 가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강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법리나 제도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비친족 동거가구 관련 법적 과제

1인가구의 급증과 가족공동체의 해체 가속 현상은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비친족 동거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주택형태와 주거비용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전세제도의 붕괴와 월세형 주택 임대차의 급증은 주거비의 절감 방식으로 친족이 아닌 사회인이 동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친족동거가구는 1인가구가 집합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각자가 속한 가족공동체에서 생계는 공동으로 하면서 주거를 달리하되, 주택의 이용관계는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가족공동체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비친족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생계는 달리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각자가 비용을 분담하되 주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일부분은 단독으로, 일부분은 여럿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적인 사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관계이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형태 중에서 최근의 공동생활주택은 주거생활공간 중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유부분 내지 전용공간인데 이를 공동이용공간(예컨대 식당이나 거실 등)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거나 공동이용공간으로 전환되어 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계약 목적물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주택과 같은 비친족동거가구의 주거공간은 배타적 전유공간과 공유공간(공동생활공간)이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동이용시설이나 공용부분과는 그 건축목적 내지 이용목적이 다르다.

비친족공동주거는 1인가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거를 달리하는 가족 중의 일부가 공동주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용관계에 놓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연고자나 보호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게 된다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잔여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재산분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와 공동생활주택에서 비친족공동주거를 누리는 경우에는 동거자에게 특별연고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있다.

1인가구의 사망시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에 대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물 선점의 법리에 의하든,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법리에 의하든, 사망한 1인가구의 소유였던 동산 등의 유류물 잔여재산을 비친족동거인 내지 비친족공동주거자가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1인가구의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내지 전세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과제를 낳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세대주 및 동거인의 관계로 볼 것인지, 공동생활주택의 거주자는 모두 독자적인 세대주로 인정할 것인지, 건물주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물주를 세대주로 하고 나머지 모든 공동주거인을 동거인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소가 부여되지만, 별도의 주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내지 단독주택의 연합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소(주민등록)를 달리하게 된다. 별개의 세대로 되는 것이다.

공동생활주택과 같은 형태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비친족 동거가구가 문제되는 요인은 주거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생활과 주택 임대차 내지 전세관계가 결합된 복합적 법률관계 내지 중첩적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새로운 주택 임대차 내지 이용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인가구의 문제로 보는 측면은, 1인가구가 사망한 경우의 주택 이용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공동생활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수한 1인가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 제 4 절 양자제도의 확대 · 보완

### 1. 대리양육제도의 확대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sup>36)</sup>에 대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i)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ii)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같은 법 제3조제6호 및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거나 보호·양육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인가구의 사람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대리양육이나 보호수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같은 법 제3조제3호)로 정의하면서 「가정」으로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 1인가구사회에서는 보호자 자원의 비효율성을 면하기 어렵다.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같은 법 제3조제2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건강가정을 지향하는 것과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가정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아동

36)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복지 및 아동보호에 적합하다고 본다면, 1인가구의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가정의 기준」은 보호자가 ‘부부가 아닌 경우’(같은 조 제3호: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일 것”의 반대해석)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가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적합한 소득 수준’, ‘양육 교육 능력’,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4명 이내일 것’ 및 ‘일정한 범죄, 질환 전력이 없을 것’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1인가구를 포함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1인가구의 가정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 입양요건의 조정

1인가구와 관련되는 양자법상 문제점은 두 가지 요건과 관계된다. 하나는 미성년자인 양자(養子)의 동의(제871조)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제872조)의 요건이다. 전자는 1인가구인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의 문제이고, 후자는 후견인이 1인가구인 경우로서 양친이 되는 경우의 문제이다.

첫째, 양자로 될 자가 1인가구인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불가능하다. 먼저 후견인의 선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인가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없다. 그래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 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민법 제928조) 두어야 한다. 미성년인 1인가구의 경우에 당연히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i) 가정법원의 직권, ii)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민법 제932조 참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1인가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 여기에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의미하므로 제779조에서 정하는 ‘가족’보다 범위가 넓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sup>37)</sup>,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이상을 종합하면, 1인가구인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을 하려면, 먼저 후견인을 선임 받아야 그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친족, 이해관계인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될 수 있다.

입양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미성년자 본인 또는 친족(1인가구의 경우이므로 가족이 아닌 친족임)의 선임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성년후견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1인가구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의무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인가구인 미성년자의 현황이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37)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인가구의 현황조사는 가족관계등록을 소관하는 대법원이 마땅하지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위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시·읍·면의 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양친될 자가 1인가구로서 양자될 자의 후견인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2012.2.10.의 민법 개정으로 종전 민법 제872조<sup>38)</sup>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인 1인가구가 피성년후견인을 별도의 절차없이 본인의 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미성년자를 본인의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인가구와 관련하여 살피면, 1인가구인 사람이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피후견인을 후견인 본인의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후견인이 1인가구일 경우에는 입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친으로서의 요건을 고려하도록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38) 개정 전의 민법 제872조: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13>”

## 제 5 장 법제 정비 방안

### 제 1 절 개선 방향

1인가구 문제는 가족제도의 붕괴 내지 상당한 부분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가족공동체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 가족법과 가정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확대는 가족공동체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가 소극적, 보충적으로 법적인 보호나 지원을 하던 부분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가구 내지 가정은 혼인을 전제로 한 부부가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표준가구라는 개념은 부부와 2인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을 상정한 것이다. 고령화와 만혼 내지 비혼의 급증 현상은 종전의 예외적 법현실을 일반적인 법현실로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법제도의 선결요소 내지 전제요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제도의 보완 내지 보충을 필요로 한다. 법현실과 법규범이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실정법의 무흠결성 내지 규범의 완결성은 전제와 본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래 여성가족정책 전망 및 정책과제에 관한 다음의 견해는 1인가구와 관련된 법제도의 재정립에 전제적 판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즉, “미래가족 연구는 개발된 복수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가족정책 이슈와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OECD와 EU 등 이미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한 국가들이 제기한 주요 정책이슈는 2030년 한국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치관이 시나리오의 주요 축으로 설정되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이슈 또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된 시나리오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가족구조와 젠더/부모

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중장기전략과 정책 과제 발굴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sup>39)</sup>는 판단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30년까지의 지속적인 사회변화의 방향 중 하나는 1인가구의 비중이 25% 정도까지 확대된다는 예측 결과에 바탕을 두고 현행 관련 법제도 중 보완이 불가피한 사항을 특히 민사법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 그 개선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1인가구의 급증을 둘러싼 법제도의 개선은 표준가구를 전제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관련 법제도를 그 전제가 변함에 따라 타당성과 완전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래의 원칙과 예외라는 비중으로 규율되었던 1인가구의 문제를 민사법상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그 비중을 상향시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인가구의 급증은 종래 표준가구 기준의 일원적 법제도를 이원적 법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서 主副의 지위로 상향 조정하여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1인가구가 25%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사회가 도래하면, 이와 관련된 제도는 이원적 병행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

## 1. 가족법제의 보완 방향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부부 및 자녀 중심의 가족공동체를 전제로 한 현행 가족법상 제도는 1인가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동체적 요소가 결여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협조 의무와 생활비 공동분담, 상호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은 부부간의 생활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에 1인가구

---

39) 장혜경 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88면.

에는 이러한 제도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 가족공동체적 요소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나 사회공동체적 요소의 지원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1인가구의 특성상 행위능력의 보충이나 사적 자치의 확장 등과 같은 부문에서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례나 별도의 보충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친족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에 관한 행정 즉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결합되는 부문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속문제나 청구권의 행사 문제, 사망신고나 장사(葬事) 등과 같은 사후 처리의 문제, 긴급한 경우의 사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의 1인 가구의 재산 및 생명의 보호 문제 등에 관하여도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1인가구가 표준가구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될 요소는 완화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표준가구는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족공동체이다. 혼인과 혈연을 일반적인 요건으로 하여 형성되는 가족공동체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혼인 없이, 혈연이 없이도 가족공동체에 준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당연히 가족공동체의 개념 정의가 완화되거나 확장될 필요가 있다.

## 2. 민사특별법 개선방향

1인가구와 관련된 민사특별법으로는 「사망에 관한 법률관계의 규율」, 「장사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규율」, 「생활보호 및 특수한 사무관리 법률관계의 규율」, 「민사절차법상의 신고 등의 규율」 등이다.

첫째, 사망에 관한 법률관계의 보완이다. 우선 사망의 절차법 내지 공법상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변사체의 발견 및 신고, 사망 신고, 실종 및 실종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변사체의 발견 및 신고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변사체의 확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현행법령은 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할 사항은, 누가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할 것인가? 소관 행정기관은 어떤 우선순위로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는가 등이다.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사회공동체나 공공기관이 그 역할 내지 기능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1인가구의 사망시 사망신고는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행법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하도록 전제되어 있다. 이들의 결여된 1인가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신고 의무자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망의 신고자(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제2항)와 무연고 시신의 처리자(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의2)가 다르므로 행정절차를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이고, 무연고자는 신원을 알 수 있으나 사망의 신고나 시신의 처리를 할 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인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사망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상 보완이 필요하다.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보충적인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면, 통보받은 시·읍·면장과의 업무 연계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법률관계에서의 사적 자치의 보완이다.

법률행위 부분과 사실행위 부분, 사회생활 부분과 가정생활부분에 있어서 대리와 위임 및 감호나 보살핌 관계가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사적 자치의 보완 내지 보충의 문제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세금 및 공과금 등의 납부,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령, 집을 비울 경우의 필요조치(애완동물, 우편물, 신문, 화초 등)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범위 확대, 재산관리인 등의 선임 및 이용 활성화 등이 요청된다.

1인가구인 근로자의 경우에 근무시간(영업시간) 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 대리인의 선임이 불가능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행위나 사회공동체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1인 가구 본인의 신상(신분, 생명, 신체, 자유 등)에 관련된 사안, 재산에 관한 사안,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사안 중 가족공동체가 현재 분담 내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적 자치의 확대 또는 보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부문별 법제 개선 방안

### 1. 가족법 중 개정방안

#### (1)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 ① 성년후견인제도의 노인 1인가구 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노인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성년후견인에게 이른바 “노인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행위의 위험 여부를 관찰하고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신속한 예방조치 △노인 박해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긴급구호조치 △이에 다른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한다”<sup>40)</sup>는 주장은 성년후견의 문제가 아니고, ‘고령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인복지와 관련한 의무로서 성년후견 지원 대책의 근거를 부여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는 경우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40) 전계 법률신문, 2015.9.10., 7면.



②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성년 후견제 이용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호자의 역할과 결부하면 그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원용할 수 있다.<sup>41)</sup>

고려할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의 지원 영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더하여, i)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 ii) 권리의 적절한 대변, iii) 권리침해의 위험에 대한 예방 또는 방지 조치를 포함하게 되어 오히려 후견인보다 더 넓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제4항).

이를 원용하여 1인가구의 경우에 특히 저소득의 고령1인가구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후견제도 내지 보호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중 후견인에 관한 규정에서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민법의 성격이나 규정 내용 및 방식상 곤란하다. 사회보장 관련법령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합하다.

---

41) 제9조제1항은 성년후견 이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한 것이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성년후견인에게 민법상의 권한 및 의무 이외에 노인인권 보호기관으로서 i)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행위의 위험 여부 관찰의무, ii)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신속한 예방조치의무, iii) 노인박해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긴급구호조치, iv) 이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sup>42)</sup>은 성년후견인 중 ‘노인후견인’이란 유형을 인정하고, 특별한 의무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후견인에게 친권자와 같은 「피후견인 보호 및 교양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방식이라야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한다.

## (2) 1인가구의 상속재산 처리

### ①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문제점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제1055조제1항)하므로, 반대해석상 상속인의 부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민법 제105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1인가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은 i) 일반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ii)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거쳐, iii)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1인가구는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42) 이는 ‘노인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엄덕수(6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의 주장이다. 법률신문 2015.9.10., 7면.

1인가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재산의 보존과 처리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임 청구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1인가구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② 1인가구의 상속재산 처리

사망신고 의무자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가구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상속인의 부존재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이 전자정부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는 민법에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 내지 처분청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조사, 사전관리 등에 대하여 흠결되어 있다. 1인가구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변동에 따른 재산관리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부동산물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금 및 동산 기타 재산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 승인으로 종료하지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절차(제105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한

이후에 남은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담보물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단순한 채권자이므로 민법 제1059조는 국고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43)</sup> 반대해석상 담보물권자는 국고 귀속 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이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물권법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며, 「국유재산법」과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법」은 상속인없는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3) 사정변경에 따른 1인가구의 재산 보호

1인가구의 사람이 증여를 한 경우라도, 사정변경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처럼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해제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특히 고령의 1인가구가 경솔한 판단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을 곤궁하게 하는 결과로 된다.

현존하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2015년 9월9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처럼 증여자 일반에게 제한없이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증여계약 또는 계약의 해제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권과는 달리 가능한 한 예외규정의 해석 법리에 따라 좁게 해석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증

43) 민법 제1056조는 “가정법원에 의하여 분여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산을 위한 채무확인 조치에 불과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자'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 현존하는 이익의 반환에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계속 증가하는 1인가구의 경우에 현행법상 연고자로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사실상 시체 처리를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연고자가 없는 시체로서 유족의 승인없이 해부할 수 있는 경우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에 제공하게 하고 그 의과대학의 부담으로 시체를 화장·봉안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 제4조제1항 제2호를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연고자 중에서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로 개정하여, 시체 인수자의 범위를 연고자로 명확히 하고, 해부기증을 확대하되, 의과대학의 부담으로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1인가구의 경우에, 생전에 연고자가 없음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무연고자 대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신고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처리 후 공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연고자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무연고 시체를 보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무연고의 신고는 제12조제2항의 단서로, “무연고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연고자가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장사에 관하여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종교단체나 상조서비스를 운영하는 상조조합의 관리자는 연고자가 없는 신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장사(葬事)를 시행하는 경우, 미리 연고자의 유무, 장사의 유형, 장사의 방식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제2조제16호의 넓은 의미의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 신고를 받은 즉시 이를 등기관서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 중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 및 총괄청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연고자의 사망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 접수시 지체없이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무연고 1인가구자의 사망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후 국가로 귀속됨을 예고등기나 부기등기로 기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향후 1인가구와 관련된 법제도의 보완 및 개선은 1인가구의 사회적 비중 증가에 수반하는 법현실의 변화와 그 방향을 같이 할 것으로 본다.

가족공동체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의 재구성이 통하여 1인가구 사회 법제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공동체가 부담할 부분, 개인이 부담할 부분, 준가족공동체 인정여부 및 적용법리의 범위 등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이성은 외 2인, 서울시 비혼 여성 1인 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장혜경 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법률신문, 2015.9.10.

배인구, “성년후견제도”, 『가정상담』(2015.2. 통권 378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참고자료>

조주현 외 1인,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6집 제4호, 2010.

김현희,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국가의 법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2.

김혜영 외 3인,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김희연 외,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이슈 & 진단 제 113호, 경기개발연구원, 2013.9.

문은영 외, 서울시 고령1인 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반정호,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참고문헌

- 박승희, 가족의 다양성론에 대한 성찰적 검토, 경제와 사회, 여름호, 2006.
- 박경래, 한국형 셉테드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셉테드학회, 2010.
- 변미리, 혼자 사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법연 제4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신상영, 서울의 1인 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서울경제, 서울연구원, 2011.10.
- 이은미, 인구과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제422호, 2013.7.
- 이현정, 한국과 미국의 1인가구 특성 비교,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12.
- 장혜경 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장혜경 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정경희,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정경희 외,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정경희, 1인 가구 급증 현황과 정책적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자료, 2014.
- 차경욱,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집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



황정임 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 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Eric Klinenberg,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Penguin Books, 2013.

藤森 克彦, 単身世帯の増加と求められるセーフティネットの再構築 — 「ひとりでも生きられる社会」に向けて—, みずほ情報総研, 2008.12.

藤森 克彦, 単身急増社会の衝撃,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0.

山口 道宏, 無縁介護—単身高齢社会の老い・孤立・貧困, 現代書館, 2012.11.

NHK「無縁社会プロジェクト」取材班, 無縁社会, 文藝春秋, 2010.11.

### <참고 법령 및 의원발의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9.] [법률 제13108호, 2015.1.28.,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45호, 2015.12.29.,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63호, 2015.12.29., 일부개정]



참 고 문 헌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7.] [법률 제13639호, 2015.12.29., 일부개정]

검역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45호, 2014.3.18., 일부개정]

검찰사건 사무규칙

[시행 2015.11.12.] [법무부령 제852호, 2015.11.12., 일부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60호, 2015.1.6., 타법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6호, 2014.12.30.,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57호, 2015.12.15., 일부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16.2.1.] [법률 제13454호, 2015.7.31.,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재해구호법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12.31., 타법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5호, 2015.5.18., 일부개정]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14.5.30.] [기획재정부령 제425호, 2014.5.30.,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18호, 2016.1.27.,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29호, 2015.12.29.,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5.12.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참 고 문 헌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소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2016.1.19.] [법률 제13760호, 2016.1.19.,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529호, 2014.3.24.,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0.]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2015.10.19., 일부개정]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793, 발의연월일 : 2015.9.9]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B5T0M9I0W9W1L0Q5M9D0P6R8F1L0](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B5T0M9I0W9W1L0Q5M9D0P6R8F1L0)])